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
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인

2008년 2월 22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재정경제부장 권 오 규**

◎대통령령 제2062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 (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0만원(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세액과 가산세 세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신고한 국세로서 그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200만원까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③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의 종류는 개인이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포함한다)로 한다.

- 1. 소득세
- 2. 부가가치세
- 3. 종합부동산세
- 4. 주세
- 5. 개별소비세

④ 국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국세납부대행용역의 대가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 국세청장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국세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5조의3제2항을 삭제한다.

제6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1조의4제2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법 제81조의4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한다.

제6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한 때에는 해당 납세자와 납세관리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5조의4제7항 중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가목”을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을 제1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법 제84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고 건별로 1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가 있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하고,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

다고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명의를 사용한 때
2.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때

제66조의 제목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를 “(고액·상습채납자 등 명단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5조의5제1항”을 “법 제8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란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명단공개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국세를 추징당하였거나 추징당한 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때
2. 명단공개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소득세법」 제160조의3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때
3. 명단공개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허위영수증”이라 한다)을 5회 이상 교부하였거나 그 발급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인 때

⑦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 또는 세액, 허위영수증 교부 건수 또는 발급금액 등으로 한다.

제66조제8항(중전의 제6항) 중 “채납자 명단공개대상자”를 “명단공개대상자”로 한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통계자료의 공개) ① 법 제85조의6제2항에 따라 국세청에 두는 국세통계심의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세청장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국세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중 임명한 자 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통계청장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소속 일반직 공무원 중 지명한 자 4명
2. 국세청장이 법률·통계 등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 위촉한 5명 (이하 이 조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
- ②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국세통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장이 외부위원 중에서 정

한다.

④ 국세통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통계연보에 수록할 법 제85조의6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이하 “통계자료”라 한다)의 심의 등 국세통계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국세통계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법 제85조의6제3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세청장은 제출기간이 따로 명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국세청장은 제6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제공을 요청받은 통계자료가 보관·관리되지 아니하거나 생산할 수 없는 것이면 그 사유를 첨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국세청장은 제6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계자료를 제공한 경우 그 사본을 7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등에 의한 국세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납부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제도의 도입, 납부기한 연장사유의 추가, 실질과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명단공개를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 8830호, 2007. 12. 31.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의 대상(영 제26조의2 신설)

(1)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가 허용됨에 따라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대상 세목, 세액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대상 세목을 개인 납세자가 납부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하고, 200만원을 한도로 함.

(3)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어려운 납세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명의위장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영 제65조의4제 15항 신설)

(1)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하는 자에게 지급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포상금은 신고 건별로 100만원을 지급하되, 동일 사안에 대하여 중복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되,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3) 사회적 감시 시스템을 통하여 명의대여에 의한 조세회피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기에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명단공개 대상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범위(영 제66조제6항 신설)

(1)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인적사항·국세추징명세 등을 국세정보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하게 됨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명단공개일 기준 2년 이내에 3회 이상 세금을 추징당하였거나 추징세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단체, 명단공개일 기준 3년 이내에 허위기부금영수증을 5회 이상 교부하였거나 그 발급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인 단체 등을 명단공개 대상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함.

(3) 불성실기부금단체에 대한 제재 강화로 건전한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국세통계자료의 제공(영 제67조 신설)

(1) 과세자료를 가공한 국세통계자료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국세통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국세청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의 요구에 따른 통계자료 제공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세통계심의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세법의 제·개정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되,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국세통계의 정보 공개 확대로 국민의 알권리가 실현되고, 세법의 제·개정 시 세수효과 등 경제적 분석을 통한 심도있는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8년 2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재정경제부장관 권오규**

●대통령령 제20623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